

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

- 산업부문 -

『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, 『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』 제8조의2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(산업 부문)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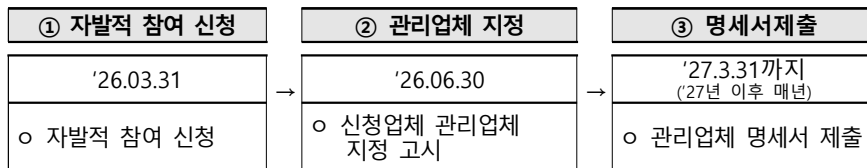
2026년 3월 13일
산업통상부장관

1. 근거 법령

- 『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
- 『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』 제8조의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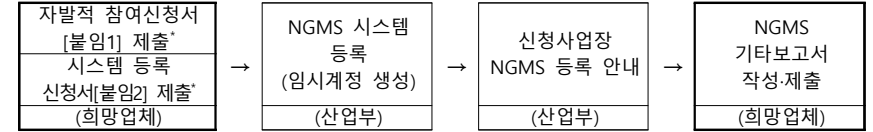
2. 신청대상 및 일정

- **(대상)**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*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
 - * 최근 3년간('23~'25년)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든 사업장 기준 연평균 5만톤(tCO₂eq) 또는 사업장 기준 1.5만톤(tCO₂eq) 이상인 업체
- **(일정)**



3. 신청 안내

- 제출일정 : '26.03.13(금) ~ '26.03.31(화)
- 제출방법



*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(ghgtm@energy.or.kr) 메일 제출

- 작성내용 (붙임1 참고)
 - 업체정보(업체명, 법인등록번호, 부문, 업종, 주소 등)
 - 자발적 참여업체 사업장명 및 온실가스 배출량
 - 신청사유
 - 명세서 정보(사업장명, 배출량 등) 및 검증보고서

※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명세서, 검증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시 연료사용량, 전력사용량 등 활동자료를 활용한 배출량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(필요시 배출량 산정 자료 제공)

4. 향후일정

- 자발적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·고시(~'26.6.30)

5. 참고사항

- 기존 자발적 참여업체(산업 부문) 중 다음 이행연도에 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'26년 3월 31일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* '26.3.31일까지 제출시, 관리업체 지정 해지되며 '27년 이후 명세서 제출 의무 없음

6. 문의처

- 박창언 주무관(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, 044-203-4135)
- 권도현 대리(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, 052-920-0577)
-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(ghgtm@energy.or.kr, 02-6943-9321~5)
- NGMS(시스템 입력·요류 문의, 1577-8065)

[붙임1]

자발적참여신청서					
업체 정보	업체명		법인등록번호		
	부 문		업종 (대표업종)		
	주 소				
신청 내역					
자발적 참여 업체		온실가스 배출량(tCO ₂ -eq)			
		평균	지정연도-3 (년)	지정연도-2 (년)	지정연도-1 (년)
참여 사업장	사업장명 1				
	사업장명 2				
	...				
신청 사유					
<p>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7조의2 제1항 및 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 신청인 (인)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</div>					
<p>※ 구비서류</p> <p>1.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</p> <p>2.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</p>					

[붙임2]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신청

시스템 등록 신청서		
1. 법인 정보	법인명	
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
	법인전화번호	
	업종	
	주소	
	법인가분 (법인기업/공공기관)	
2. 사업장 정보	사업장명	
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
	사업장 전화번호	
	업종	
	사업장 소재지	
3. 명세서 작성 여부		